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9명(6급 9명, 7급 22명, 8급 17명, 9급 1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22명(6급 8명, 7급 36명, 8급 37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급 3, 전문경력관 다급 9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세관관서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29. ~ 1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조의3제3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1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
터 관리 등 총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13.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14.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 제도의 기획 및 운영

15.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8.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

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1.
7.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2.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중 총계 “366”을 “368”로 하고, 일반직 계 “365”를 “367”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5”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72”를 “374”로 하고, 일반직 계 “371”을 “3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5”로 한다.

별표 8 중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7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710”을 “4,767”로 하며, 관세서기 “1,005”를 “1,013”으로, 관세서기보 “718”을 “76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7.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7.0”을 삭제하고, “관세서기 8.0”을 삭제하며, “관세서기보 49.0”을 삭제한다.

별표 8의2 중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716”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716”을 “4,773”으로 하며, 관세서기 “956”을 “964”로, 관세서기보 “675”를 “724”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7.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7.0”을 삭제하고, “관세서기 8.0”을 삭제하며, “관세서기보 49.0”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 (6급 9명, 7급 2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8급 14명, 9급 9명)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7급 5명, 8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7명, 전문경력관 다급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5)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4명, 전문경력관 다급 9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② (생략) ③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 21. (생략) <u><신설></u> <u><신설></u> 22. (생략) ④ ~ ⑥ (생략)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1. (현행과 같음) 21의2. <u>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21의3. <u>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2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② (생략)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u>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 13. <u>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u>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u> 13. <u>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u>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
항

1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
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
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
항

17.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8.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19. (생략)

④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2.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
證輸出者)제도의 기획 및 운
영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
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14.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
(認證輸出者) 제도의 기획 및
운영

15.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
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
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
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8.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

④ -----
-----.

1.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
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u>사항</u> 4. <u>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u> 6. <u>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u> 4. <u>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6. <u>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사항</u> 7. <u>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 8. <u>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u> 9. <u>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11. <u>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u>
---	--

<신 설>

⑤·⑥ (생 략)

제3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청
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
원은 별표 8 제2호 및 별표 8의
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2.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⑤·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청
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관세청
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6</u>	<u>368</u>	+2
·	·	·	
·	·	·	
일반직 계	<u>365</u>	<u>367</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u>	<u>5</u>	+2
·	·	·	
·	·	·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72</u>	<u>374</u>	+2
·	·	·	
·	·	·	
일반직 계	<u>371</u>	<u>373</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u>	<u>5</u>	+2
·	·	·	
·	·	·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u> <u>공무원은 제외한다)</u>	<u>4,710</u>	<u><삭 제></u>	-4,710
일반직 계	<u>4,710</u>	<u>4,767</u>	+57
·	·	·	
·	·	·	
관세서기	<u>1,005</u>	<u>1,013</u>	+8
·	·	·	
·	·	·	
관세서기보	<u>718</u>	<u>767</u>	+49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57.0</u>	<u><삭 제></u>	-57.0
<u>일반직 계</u>	<u>57.0</u>	<u><삭 제></u>	-57.0
<u>관세서기</u>	<u>8.0</u>	<u><삭 제></u>	-8.0
<u>관세서기보</u>	<u>49.0</u>	<u><삭 제></u>	-49.0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u>	<u>4,716</u>	<u><삭 제></u>	-4,716
일반직 계	<u>4,716</u>	<u>4,773</u>	+57
•	•	•	
•	•	•	
관세서기	<u>956</u>	<u>964</u>	+8
•	•	•	
•	•	•	
관세서기보	<u>675</u>	<u>724</u>	+49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57.0</u>	<u><삭 제></u>	-57.0
<u>일반직 계</u>	<u>57.0</u>	<u><삭 제></u>	-57.0
<u>관세서기</u>	<u>8.0</u>	<u><삭 제></u>	-8.0
<u>관세서기보</u>	<u>49.0</u>	<u><삭 제></u>	-49.0